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심사보고서

2022. 2. 10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
- 발의자: 김인호 의원 외 9명(김인호,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 배지훈, 박정환, 이신자, 김귀화, 조복희, 홍복조)
- 발의일자: 2022. 1. 26.
- 회부일자: 2022. 1. 27.
- 검토기간: 2022. 1. 28. ~ 2. 4.
- 상정 및 의결: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2. 2. 10.)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및 주민조례발안 도입 등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- 의회사무국장 사무에 주민조례 발안, 사무직원의 복무, 교육, 후생, 징계, 평가 및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추가(안 제2조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 및 제3조)
-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등
 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조 ~ 제2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47조~제52조, 제102조~제104조 및 부칙 제6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 제6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
 - 행정안전부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표준안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2. 1. 26. ~ 2022. 2. 7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김경숙)

- 본 규칙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가 신설되어 사무국장과 정책지원관의 세부 사무분장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한 사항임.
- 규칙안 제2조의 사무국장 분장사무임.
 - 안 제14호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달서구민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며,

- 안 제15호 및 제16호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설업무를 규정하였음.
- 규칙안 제4조의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규정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,
- 그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규칙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